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법인은 학교법인 송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설치학교)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 제4조(주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에 둔다.
- 제5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 제6조(자산의 구분) ①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이자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본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④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⑤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 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본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 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내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① 법인 및 경운대학교에 각각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 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3년
2. 감사 3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1항 제1호, 제2호와 같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도덕정신의 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인사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 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시에는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④ 삭제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상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명예교수, 겸임 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 제5항의 감사 추천등에 관하여는 개방이사추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1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대한 세부기준) 삭제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회의일시, 장소, 안건, 참석대상, 담당자명)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대학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작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임·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 간서명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이사회 회의록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5조 제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31조의2(대학 평의위원회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3(평의원회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 할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 5명
2. 직원 : 4명
3. 조교 : 1명
4. 학생 : 1명
5. 동문 : 1명
6. 외부인 : 1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중 어느 한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4(평의원회의 의장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5(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6(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의7(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법인은 개방이사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 익 사 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3. 과수원, 묘포장 경영
4.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5.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법인체로서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경운사회복지병원
2. 제32조의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운영외의 사업을 하기 위한 학교법인 송선학원 사업소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운사회복지병원 : 대구시 북구 태전동 345번지
2.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운영외의 사업소주소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 5-1번지

제35조(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7조의2(기록물관리) 이 법인이 해산인가, 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적부

- 2. 조직, 회계, 예산 관련 자료
-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한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명

제39조(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정년보장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 1. 교수 : 정년까지, 단 신규채용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간 임용 할 수 있다.
- 2. 부교수 : 6년
- 3. 조교수 : 4년
- 4. 삭제
- 5. 조교 : 1년

③신규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임용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2. 급여
 - 정관 제46조 정하는 보수
-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등에 관한 사항
-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호내지 제6호의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변경 할 수 있다.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적용한다

⑤전임교원의 전보, 겸임, 파견,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과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사항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혁신원장, 처(본부)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3(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법정정원의 7% 이내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총원계획 수급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9조의4(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40조(임시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강사의 경우에는 제5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로 휴직할 수 없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1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때 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41조 제7의 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10. 제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1조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제41조 제1호의 경우 최초 1년이후 연장된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 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49조(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대학혁신원장의 보직을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교원을 포함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교무업무 담당 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2항 외부위원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의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기간)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는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7조(징계기준)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강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7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 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67조의3(징계의 감경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과와 관련한 비위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통합정보시스템 관련한 비위로 징계

의 대상이 된 경우

3.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시효가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 무 직 원

제71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칭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2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되, 전보·겸임·파견·휴직·복직에 관한 사항과 계약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임용한다.

제7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8조(법인 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법인국장은 사무

업무를 관장한다.

②법인사무국에는 하부조직으로 총무과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또는, 위임전결 업무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법인 사무국 구성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퇴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절 대 학

제79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부총장, 미래전략부총장 및 대학혁신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부총장, 미래전략부총장 및 대학혁신원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 되었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 미래전략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학혁신원장은 혁신본부 업무를 통할한다.

제79조의2(명예총장) ①대학에 명예총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총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명예총장은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부여하는 직위로서 순수한 명예직으로 한다.

③명예총장은 학사행정 및 학교경영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며, 총장의 직무 및 권한을 위임 받거나 대리 할 수 없다.

④명예총장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79조의3(대학원장 및 학장 등) ①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 대학원장을 두고 단과대학에는 학장을 두며,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각 대학원과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③각 대학원에 행정부서(팀)을 둘 수 있으며, 부서(팀)장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행정조직) ①대학교에 기획조정처·교학처·인재개발처·산학연구처·행정지원처·입학홍보처·혁신본부를 두며, 총장, 부총장 및 미래전략부총장 직속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직속위원회 세 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 처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행정지원처장 및 혁신본부장의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부서(팀)을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 부장,

과장 또는 팀장 등은 교원으로 겸보 또는 주사보 이상으로 보한다.

④제1항 각 처(본부) 조직의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81조(부속 및 부설기관) ①대학에는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 및 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의2(산학협력단) ①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두며, 그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제82조(도서관) ①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장 밑에 학술지원과를 두며, 관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고 학술지원과장은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 원

제83조(정원) ① 법인 및 경운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계약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임용·운영할 수 있다.

② 경운대학교내 일반직원의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총 정원내에서 총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8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구광역시 소재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8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6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박중광	1946. 8. 21	4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59-3
이 사	김종옥	1919. 6. 15	4년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35번지
이 사	김윤환	1932. 6. 7	4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1497-32 청구빌라 A동 301호
이 사	박유정	1935. 7. 28	2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111-1청운A 2-1002호
이 사	이규식	1939. 8. 10	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14
이 사	김종택	1939. 5. 24	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240-2
이 사	배기효	1954. 1. 20	2년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 28-1 보성A6동 110호
감 사	박병목	1958. 12. 6	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1 보성A 103-1210
감 사	양순기	1947. 8. 26	1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979-12

제9장 청렴의무 등 <신설 2022.04.28.>

제87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04.28.>

제88조(행동강령) 제87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04.28.>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0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설치 경영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대학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한국산업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경운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기존임기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중인 임원 및 총장은 기존임기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임원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당시 재임중인 임원 및 총장은 기존임기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삭제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총장 등) 및 제80조(행정조 직)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별표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별표1] 법인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3급 (부참여)	1명
5급 (부참사)	1명
7급 (부주사)	1명

[별표2] 학교 일반 직원 정원

총 계	73명
일반직계	60명
기술직계	13명